

**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 등**(제10조 관련)

1. 수리기준

구분		수리기준
가. 용기		별표 10 제2호·제3호나목2)
나. 용기부속품		별표 10의2 제2호·제3호나목2)
다. 냉동기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별표 11 제2호·제3호나목1)나)
	그 밖의 냉동기	별표 11 제2호·제3호나목2)
라. 특정설비	압력용기(복합재료 압력용기는 제외한다),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별표 12 제2호·제3호나목1)
	독성가스 배관용 밸브,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별표 12 제2호·제3호나목3)나)
	안전밸브,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	별표 12 제2호·제3호나목4)나)
	그 밖의 특정설비	별표 12 제2호·제3호나목2)

비고: 수리 검사에 대해서도 위 표에 따른다.

2. 수리범위

수리자격자	수리범위
가. 법 제5조에 따라 용기의 제조등록을 한 자	1) 용기몸체의 용접 2) 아세틸렌용기 내의 다공물질 교체 3) 용기의 스커트·프로텍터 및 넥크링의 교체 및 가공 4) 용기부속품의 부품 교체 5) 저온 또는 초저온용기의 단열재 교체 6) 초저온용기부속품의 탈·부착
나. 법 제5조에 따라 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한 자	1) 특정설비몸체의 용접 2) 특정설비의 부속품(그 부품을 포함한다)의 교체 및 가공 3) 단열재교체
다. 법 제5조에 따라 냉동기의 제조등록을 한 자	1) 냉동기용접부분의 용접 2) 냉동기부속품(그 부품을 포함한다)의 교체 및 가공 3) 냉동기의 단열재 교체
라. 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1) 초저온용기부속품의 탈·부착 및 용기부속품의 부품(안전장치는 제외한다) 교체(용기부속품제조자가 그 부속품의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한 부품의 교체만을

	<p>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특정설비의 부품 교체</li> <li>3) 냉동기의 부품 교체</li> <li>4) 단열재 교체(고압가스특정제조자만을 말한다)</li> <li>5) 용접가공[고압가스특정제조자로 한정하며, 특정설비품체의 용접가공은 제외한다. 다만, 특정설비품체의 용접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제조자의 경우에는 특정설비(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제외한다)품체의 용접가공도 할 수 있다]</li> </ol>
<p>마. 법 제3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용기등의 검사기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정설비의 부품교체 및 용접(특정설비품체의 용접은 제외한다. 다만, 특정설비제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제조업소로 하여금 용접을 하게 하거나, 특정설비품체의 용접수리를 할 수 있는 용접설비기능사 또는 용접기능사 이상의 자격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2) 냉동설비의 부품 교체 및 용접</li> <li>3) 단열재 교체</li> <li>4) 용기의 프로텍터·스커트 교체 및 용접(열처리설비를 갖춘 전문검사기관만을 말한다)</li> <li>5) 초저온용기부속품의 탈·부착 및 용기부속품의 부품 교체</li> <li>6) 액화석유가스를 액체상태로 사용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용기 액출구의 나사사용 막음조치(막음조치에 사용하는 나사의 규격은 KS B 6212에 적합한 경우만을 말한다)</li> </ol>
<p>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p>	<p>액화석유가스용기용 밸브의 부품 교체(핸들 교체 등 그 부품의 교체 시 가스누출의 우려가 없는 경우만을 말한다)</p>
<p>사.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만을 말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에 필요한 잔류가스의 회</p>	<p>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p>

수장치를 갖춘 자	
-----------	--